

제주지방법원 2021. 5. 3 선고 2020가단68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김수경, 김재인, 정우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성정훈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4. 12.

판 결 선 고 2021. 5. 3.

주 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9. 2. 17.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2019. 4. 26. 접수 제373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준비서면의 각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판사 최석문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시 E, F에 있는 [도로명 주소 제주시 G]

H아파트 I동

철근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주차장, 창고, 펌프실

1층 내지 5층 각 454.55㎡

지층 주차장, 창고, 펌프실 371.75㎡ (내역 주차장 339.59㎡, 창고 13.26㎡, 펌프실 18.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J호 철근조 72.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제주시 E 대 1,643㎡

2. 제주시 F 대 1,43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3,085분의 49.52

2. 소유권대지권 3,085분의 49.52 끝.

[별지]

청구원인

1. 원고의 지위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수개의 금융기관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른 바 다중채무자 중 회생가능성이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하여 10개 금융기관((주)K [], (주)L [], (주)M [], (주)N [], 중소기업은행, O [](주), P [](주), Q [](주), R [](주), S [](주))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양수하여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사단법인 T []와 연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 주채무자 소의 C []의 채권양도일 당시 카드(대출)금 채무내역은 채권양도일 당시의 원금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으며, 소의인이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던 중 채권양도 금융기관은 2003. 10. 24. U [] 주식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U [] 주식회사는 양수한 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아 래 -

채권양도금융기관	O []	S []	R []
주채무자	C []		
연대보증인	-		
최초대출(카드계약일)	2001. 07. 30.	2003. 04. 03.	2002. 12. 04.
연체개시일	2003. 07. 23.	2003. 05. 27.	2003. 07. 25.
미상환원금	금 11,562,804원	금 1,062,901원	금 2,865,855원
양도일 이후 지연손해금(연17%)	금 33,329,210원	금 3,063,757원	금 8,260,683원
미상환채권합계금	금 60,145,210원		

다.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권양도사실을 소외인에게 통지하고 수차례에 걸쳐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소외인은 하등의 이유없이 그 이행을 지체하여,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6차전1416 양수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후 지급명령은 결정 후 확정되었습니다.

2. 피고와 소외 C의 관계 및 사해행위

가. 소외 C은 2019년 2월 17일 자신의 부(父)인 V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자신의 형제(남매)인 피고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9년 4월 26일 접수 제373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해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¹⁾,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²⁾,

다. 소외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의 명의로 별지목록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명백한 사해행위라 할 것입니다.

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 51797 판결

2)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 29119호 판결

4. 결 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소외인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이를 이전받은 피고 또한 악의의 수익자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1. 기존 소장 기재상 주장 등의 원용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변경된 청구원인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제출하였던 기존 소장 기재상 청구원인을 모두 원용합니다.

2. 채무자 C의 상속지분 특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함에 있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겠습니다)에 관한 상속과 관련하여 채무자 C의 상속지분을 살펴본 결과, 피상속인 망 V이 2019. 2. 17. 사망함에 따라 망 V의 자녀들인 W, 피고, C(주채무자), X의 상속지분은 각 1/4입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 망 V의 사망으로 인하여 주채무자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가지는 법정상속지분은 4분의 1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이 채무자인 C의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준비서면

1. 채무자 C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가. 제주시청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해행위가 있었던 2019년 당시 제주시를 제외한 전국 각 지방단체에서 C에게 부과되었던 재산세, 자동차세 및 그 밖의 지방세에 대하여 '과세사실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2021. 4. 2.자 제주시 과세정보회신서 참조).

나. C에 대한 제주시 과세내역은 2019. 5.경 자동차세(차량번호 Y) 7,570원, 2019. 8. 경 주민세 6,000원, 지방교육세 600원이 전부였습니다(2021. 4. 2.자 제주시 과세정보회신서 참조).

다. 현재 C이 Y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차종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세액이 7,570원인 것으로 보아 3톤 이하 소형자동차로 추정되는바, 그 재산적 가치가 극히 낮은 차량이라 할 것입니다(갑 제5호증 과세표준 및 세율표 참조).

라. 아울러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이 60,145,210원임을 종합하여 보건대, C의 무자력은 넉넉히 입증된다고 할 것입니다.

마. 따라서 채무자 C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는 점, 피고에게 상속 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유일한 상속재산을 이전하였다는 점, 따라서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연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임이 분명하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취소되고 원상회복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인용하여 주실 것을 구합니다.

